

일반  
 논문

**‘2000년 여성국제전범법정’,  
 가해자 책임 귀속을 위한 여정**

이나영 \_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논문요약**

이 글은 피해당사자와 지원 단체들, 전 세계 시민들이 연대해 가해자의 법적 책임을 묻고자 했던 ‘2000년 여성국제전범법정’의 배경과 진행 과정, 쟁점을 구체적으로 살피고 의미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90년대는 글로벌 여성운동의 성장과 전시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 제고, 민주화운동과 함께 한 국내 여성운동의 성장, 성폭력 가해자 처벌에 대한 법과 제도의 성립, 무엇보다 정대협을 중심으로 한 피해당사자들의 적극적 역할과 아시아연대회의 등 국제연대의 확장으로 유엔 등 국제사회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성격과 해결 원칙이 확립되었던 시기다. 그럼에도 고노담화 이후 ‘국민기금(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으로 퇴행한 일본국에 대한 비판과 ‘위안부’ 문제를 전쟁범죄로 다루지 않았던 제국주의적 국제법에 대한 도전의 일환으로 ‘2000년 법정’이 기획되었다. ‘2000년 법정’의 중요한 의미는 첫째, 남북-재일조선인-일본 여성 연대로 분단과 이데올로기의 벽을 넘었다는 점이다. 둘째, 피해생존자의 언어와 행동으로 가부장제 사회에서 성적 관계에 관한 관습은 물론 남성중심적, 식민주의적, 제국주의적 법의 보편성과 규범성, 정상성에 도전했다. 셋째, 무엇보다 전시 성폭력 ‘불처벌’이라는 오랜 관행을 끊고자 피해자 여성의 관점에서 제기한 ‘책임자 처벌’은 이후 다양한 방식으로 국내외에 영향을 미쳤다. 아카데미 역사부정론이 횡횡하는 이 때,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이 우리 모두의 과제임을 다시 환기하는 일이야말로

로 '2000년 법정'의 교훈일 것이다.

■ **주요어:** 2000년 여성국제전범법정, 일본군 성노예제,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 초국적 여성운동, 법적 책임과 책임자 처벌

## 1. 서론

2021년 1월 8일 대한민국 재판부는 국제 인권사에 길이 남을 기념비적 판결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제34민사부, 재판장 김정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 대한 피고 일본국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sup>1)</sup> 피해자들에게 승소를 안긴 판결은 일본 정부가 기한 내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1월 23일 0시에 확정되었다.

이 판결의 의미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 상 중대한 위반 사항의 경우, 주권면제가 배척될 수 있으며, 인류보편적인 인권은 어떤 국가 간 협정보다 우선이라는 진리를 깨우쳐 주었다. 개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경우에는 외국이라도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중대한 선례를 남겼다.

둘째, 식민지 시기 일본국이 저지른 행위의 불법성이 사법체계 안에서

---

1) 상세한 판결문 내용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 판결문, 사건번호 2016가합505092 참고할 것.

인정되었다. “일본제국이 자국 군대 운영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여성들을 강제로 유인, 기망하여 ‘위안부’ 생활을 강요한 행위는 불법”이라 판단함으로써, 그간 일본국이 부인해 온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인정했다.

셋째, 피해자들이 입은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상처에 공감하며, 피해자 중심 접근으로 사법적 정의를 구현했다. 구제 및 배상을 받을 피해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책무성, 정의, 법의 지배라는 국제법적 원칙을 재확인했다. “거주 이전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위협하고 혹독한 환경에서” “수없이 폭행당하고 기아와 상해, 질병, 수시로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에 시달렸던 끔찍한 피해상황을 인정하며, 모든 구제절차가 막혀 있는 피해자들의 마지막 호소를 받아들였다.

넷째, 기존의 어떤 담화나 합의로도 이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님을 재확인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2015년 ‘한일위안부 합의’ 등으로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된 것이 아님도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사회적으로 배제된 비존재, 혹은 무력한 희생자가 아니라 헌법상 보장받은 인권의 당연한 주체임을 인정한 것이다. 오랜 세월동안 피해자들과 함께 국제 인권규범을 주도적으로 갱신해 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의 값진 결실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중심이 되어 가해자 책임을 추궁한 소송은 이번이 처음인가? 일본국의 책임이 구체화된 것도 이번 판결이 최초인가? 사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운동단체들은 지난 30여 년간 꾸준히 일본 정

부의 공식사죄와 법적배상을 촉구해 왔다. 수차례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문제 해결을 호소해 왔다. 그럼에도 책임은커녕 가해자의 부인과 피해자에 대한 공격이 반복되자 피해자들과 전 세계 여성들이 연대해 2000년 도쿄에서 ‘여성국제전범법정’(이하 ‘2000년 법정’)을 개최했다. 그렇다면 ‘2000년 법정’은 구체적으로 어떤 배경에서 대두되었으며,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그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과 의미는 무엇이며, 남겨진 과제는 또 무엇인가. 이 글의 목적은 ‘2000년 법정’의 배경과 의미, 과제를 ‘가해자 책임 귀속’이라는 논점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2000년 법정’을 소환하는 이유는 세 가지다. 우선 2020년은 20주년이 되는 해였다. 유례없는 운동의 위기 상황에서도 한국과 일본에서 차례로 국제학술대회가 열렸고 초국적 페미니즘과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그 의미가 환기되었다. 다만 피해 여성들과 시민들의 힘으로 법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했던 과정에 대해서는 역사적 기록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둘째, 지난 1월 8일 판결에서 확인된 가해자 책임 부분이 기실 ‘2000년 법정’ 추진 배경과 깊은 연관성을 갖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에 다시금 그 내용과 의미를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20여 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울림이 되지 않는 현실 또한 직시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 일본군‘위안부’ 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한다.

## 2. '2000년 법정'의 배경

정진성(2016, 258-264)은 '2000년 법정'이 가능했던 배경으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이 국제연대를 통해 일궈낸 국내의 시민 사회 네트워크, 유엔 등을 통한 국제법적 해석의 축적과 전시 성폭력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의 성장을 들고 있다. 제일조선인 연구자 김부자(金 2010, 149)는 법정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 바 있다.

한국 정대협과 피해자로부터 사죄·보상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문제제기, 동시대 국제적으로 퍼진 전시성폭력에 관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조류, 그것을 받아들이고 가해자 책임을 다한다는 일본의 여성운동이라는 세 가지 움직임이 합류한 것(金 2010, 149).

한일 연구와 운동의 가장 구심점에 서 있던 두 사람은 '2000년 법정'의 배경으로, 정대협과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한 문제제기가 국제사회의 조류와 연결된 지점을 공통적으로 꼽고 있다. 필자 또한 이에 공감하며, 한국 사회 내 진보 여성운동의 성장과 성폭력 관련 입법화 과정, 글로벌 페미니즘의 성장과 국제사회 여성인권 의식의 제고, 피해당사자들의 활발한 국내의 증언 활동(소위 '증언의 시대')과 소송, 아시아연대회의를 중심으로 여성연대의 확장 등이 '2000년 법정' 개최의 주요 배경이라 생각한다.

주지하듯, 1980년대 페미니즘의 발전과 함께한 한국 진보 여성운동의 성장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 운동의 주요한 동력이 되었다. 1990년

11월 16일, 〈한국교회여성연합회〉,<sup>2)</sup> 〈정신대연구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37개 여성운동단체들과 다양한 시민, 종교, 학생 단체들이 참여해 결성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사실상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열기하에서 급속히 성장한 진보 여성운동의 핵심 인적 자원들이 주축이 되었다(이효재, 이미경, 지은희 등). 식민지 민족 차별과 계급 문제, 성차별에 대한 복합적 인지를 바탕으로 태동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 운동은 사실상 여성인권 향상을 위해 인식 변화와 구조 변혁을 추동한 한국 여성운동과 페미니즘의 성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특히 성폭력과 가정폭력 사건, 이로 인한 피해자 살해사건 및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살해사건 등에 적극 대응하고 연대해 온 진보 여성단체들의<sup>3)</sup> 활동은 성폭력에 관한 문화와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법과 제도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다.<sup>4)</sup> 성희롱·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화는

2) 1967년 창립된 한국교회여성연합회(교회연)은 1970년대부터 민주화운동과 여성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 지원에 앞장섰을 뿐 아니라, 민주 인사들과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를 국내외에 꾸준히 제기해 왔다. 특히 외화 획득을 위해 한국정부에 의해 장려된 일본인 섹스 관광 — 일명, 기생 관광 —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기생 관광추방운동'을 전개한 유일한 단체이기도 했다.

3) 〈한국여성단체연합〉(1987년 설립), 〈한국여성민우회〉(1987년 설립), 〈한국여성노동자회〉(1987년 설립), 〈한국성폭력상담소〉(1991년 설립).

4) 1994년 1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소위, 「성폭력특별법」) 제정(4월 시행), 1997년 12월 31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1998년 7월 1일 시행)이 이루어지게 된다. 1999년 2월 8일에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간접차별금지과 직장 내 성희롱 사업주 책임이 최초로 명시되었으며, 1999년 7월 1일에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성희롱이 공식적으로 정의되고, 성차별의 일환으로 보게 되었다.

1990년대 정대협 운동의 급속한 성장을 추동함은 물론, 멸시와 천대의 대상이었던 성폭력 피해생존자들의 이야기가 한국 사회에 본격적으로 공명하게 된 배경이 되기도 했다. 이들 대부분 여성단체들이 정대협 연대 단체임은 물론이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는 성폭력 관련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시민적 감수성이 대폭 성장할 수 있었다.<sup>5)</sup>

둘째, 국제 여성운동 및 글로벌 페미니즘의 성장이 맞물려 있다. 1993년 빈 세계인권대회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보편적 인권 문제로 보기 시작한 중요한 전환점이다. ‘빈 선언 및 행동강령(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을 채택해 “성에 근거한 폭력, 모든 형태의 성희롱과 성적 착취”를 [보편적] 인권 침해로 규정했으며, ‘여성의 평등한 지위와 인권’에 관한 항목에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부분이 포함되었다. 문단 38의 끝부분에 명기된 ‘전쟁 중 여성에게 가해지는 인권 침해는 국제인권법과 인도주의적 법의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침해이다. 현재 이러한 침해는 특히 살해, 조직적 강간, 성노예, 강제 임신 등을 포함하여 특별히 효과적인 대응을 요한다’는 부분은 특히 주목할 대목이다. 일본은 초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현재’라는 용어를 초안 심의회의에서 집어넣어 상대적으로 ‘과거’의 사건인 ‘위안부’ 문제를 배제시키려 했다. 이에 정대협을 중심

5) 이에 관해 이나영(2017)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 바 있다. “남성중심적 민족주의와 가부장제의 척박한 토양하에서도 ‘위안부’ 운동이 추동력을 잃지 않은 데는 1990년대 이후 페미니즘의 성장과 더불어 여성폭력에 대한 감수성이 사회 전반에 확대되고 ‘피해자 담론’이 여성운동을 추동하게 되면서 일본군 ‘위안부’를 성적 폭력의 피해자로 보는 시각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75).

으로 한 여성단체 로비 팀은 ‘현재’라는 용어를 빼고 맨 뒤에 ‘처벌(and prosecution)’을 추가하도록 요청했고 현재라는 용어는 ‘모든(all)’으로 대체되었다(여성가족부 2004).

빈 회의 이후 유엔 여성지위위원회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다룰 수 있는 국제기구의 필요성을 권고했으며 1993년에는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 선언(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을 채택하였다. 이 선언 제1조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사적, 공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여성에 대한 신체적, 성적, 심리적 해악과 여성에게 고통을 주거나 위협하는 강제와 자유의 일방적 박탈 등 젠더에 기초한 모든 폭력 행위”로 정의했다.

1995년 제4차 베이징세계여성대회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인권 차원에서 접근하게 된 또 하나의 분기점이 되었다. 여기서 채택된 ‘행동강령’은 ‘각국 정부와 국제적 및 지역적 기구들이 취해야 할 행동’으로 “무력분쟁 및 기타 분쟁 상황에서의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문서상의 기준의 유지 및 강화”, “강간, 특히 조직적 강간, 강제 매춘 기타 강제 추행과 성노예제를 포함하는 전쟁 중의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 “여성에 대한 전쟁범죄에 책임이 있는 범죄자의 기소와 여성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보상의 제공”을 제시한 바 있다(145항 (e)). 특히 세 번째 행동강령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성 구매 관광’이 포함된 데는 정대협과 한국 진보여성운동 단체들의 꾸준한 활동과 요구가 큰 역할을 하였다.<sup>6)</sup>

6) Beijing Declaration and Platform for Action, 1995. <https://www.un.org/en/events/>



셋째, 피해당사자들의 적극적 역할이다. 국내외 여성 인권 감수성이 제고되는 과정 속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국내외에서 피해 사실을 증언하며 법적 정의를 구하는 활동도 진행되었다. 최초의 법적 소송은 1991년 12월 김학순을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 세 명이 강제동원 등 전쟁 및 식민지 피해 문제에 대한 '아시아태평양전쟁 한국인희생자 보상청구 소송'이었다. 이를 필두로 10여 년간 일본국 상대 소송이 진행되었는데, 이 중 1998년 4월 27일 야마구치(山口)지방법원 시모노세키(下關)지부 시모노세키 재판(소위 '관부 재판) 1심의 '일부 승소' 판결이 최초이자 유일한 승소 판결이다. 당시 재판부는 "국회의원이 배상입법을 해야 할 의무를 불법적으로 게을렀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적 손해 배상"을 인정하고, 원고 1인당 30만 엔 배상을 명한다. 주목할 부분은 "중군위안부 제도가 소위 나치의 만행에 준하는 중대한 인권 침해였으며 위안부가 된 많은 여성의 피해를 방치한 것 또한 새로운 중대한 인권 침해를 초래한다는 점을

[pastevents/pdfs/Beijing\\_Declaration\\_and\\_Platform\\_for\\_Action.pdf](#) 이 때 채택된 행동강령에서 제기된 폭력의 정의와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아내 구타, 성적 학대, 여아 낙태, 근친강간, 생식기-음핵 절단, 음부 봉합 등) ② 지역 사회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강간, 성희롱, 성적 위협, 인신 매매, 강제 성매매, 포르노, 음란 전파, 성기 노출, 황산 테러, 지참금, 지참금 살인, 신부 화장, 아내 순사(殉死), 전족, 과도한 다이어트와 성형수술 등). ③ 국가에 의해 자행되거나 묵인되고 있는 신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일본군 '위안부', 성매매 관광, 군대 성매매 등). ④ 무력 분쟁하에 일어나는 여성인권 침해(살상, 강간, 성적 노예화, 강제 임신, 집단 학살). ⑤ 임신 관련 폭력(강제 불임, 강제 낙태, 피임제의 강제 사용, 여아 및 영아 살해, 태아 감별 살해). ⑥ 특수 상황에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소수민족, 토착민, 난민, 이주자, 장애 여성, 노인 여성, 감금되어 있는 여성, 빈곤 여성에 대한 폭력).

고려한다면 늦어도 내각관방장관 담화가 발표된 1993년 8월 4일 이후에 조속히 위안부 원고들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특별한 배상입법을 해야 할 일본국 헌법상의 의무'가 있었다며 '국가배상법' 위반이라 판시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2001년 3월 29일 히로시마(広島)고등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고 2003년 3월 25일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에서 상고기각 결정으로 최종 패소가 확정되었다. 그리고 2010년 3월 2일, 하이난 섬 재판이 상고기각됨으로써 해외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재판 열 건 모두 패소가 최종 확정되었다. 비록 사법체계 내에서의 정의 구현은 실패했으나, 피해생존자들의 법정 투쟁은 재판 방청, 보고 집회, 서명운동 등을 통해 세계에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여론을 환기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기도 했다.

동시에 피해당사자들은 1992년부터 유엔 등 국제기구에 피해자들이 직접 참석하고 증언하며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기 시작했다. 1992년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인권소위원회에는 황금주가 당사자로서는 최초로 '위안부' 피해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렸으며, 1993년 5월에는 유엔인권소위원회 산하 현대형 노예제 실무회의에 강덕경이 참석했다. 1993년 6월 비엔나 인권대회에는 북한 쪽의 장수월과 남측의 김복동이 직접 참가하고 만나기도 했으며, 1995년 베이징여성대회에는 정서운이 직접 증언에 나서 세계 여성들의 참여와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이나영 2018). 덕분에 가해자의 법적 책임을 묻는 각종 보고서, 권고, 결의안 등이 채택되었는데, 1996년 유엔 인권위원회 '여성에 대한 폭력 특별보고관' 라디카 쿠마라스와미(Radhika Coomaraswamy)의 보고서와 1998년 유엔

인권소위원회 ‘전시 성노예제 특별보고관’ 게이 맥두걸(Gay J. McDougall) 등이 대표적이다.<sup>7)</sup>

넷째, 아시아연대회의를 중심으로 한 초국적 여성 연대의 힘이다. 1992년 8월 인권소위원회에 참석하던 시기와 맞물린 8월 11-12일, 정대협은 서울에서 제1차 일본군‘위안부’ 문제 아시아연대회의를 개최하여 아시아 피해국 여성들은 물론 일본의 여성들과의 연대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sup>8)</sup> 국제사회에 ‘위안부’ 문제를 알리기 위해서는 국제적 여성연대의 필요성이 절실히 제기되었고, 국제연대 경험이 있던 교회여성들이 연결고리가 되어 마침내 1992년 8월 11-12일, 아시아 연대회의가 개최되었다. 시기적으로 주목할 부분은 김학순 피해 공개 증언 1년, 한국이 유엔에 공식 가입한 지 1년이 되는 시점이었다는 점이다. 전쟁범죄나 식민지범죄에 대한 추구는 커녕, 여성에 대한 성폭력에 대한 추심도 힘든 한국의 국내적 상황과 여성 인권이 보편적 인권으로 이해되지 못했던 국제적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부인과 한국 정부의 소극적 대응 속에서 정대협이 본격적으로 유엔 활동을 시작한 때이기도 했다.

한국에서 열린 첫 번째 회의에는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필리핀, 홍콩, 대만 등 아시아 6개국 피해자와 지원자 73명이 모였고, 이후 북한, 인도네시아, 버마, 중국 등 피해국 당사자와 지원자들의 참여 범위가 점차 넓

7) 가해자의 법적 책임과 배상을 강조한 권고안들과 결의 과정에 대해서는 이나영(2018)을 참고할 것.

8) 아시아연대회의의 관련은 문소정(2014), 정진성(2016) 등을 참고할 것.

어졌다. 시간이 갈수록 학계는 물론 노조와 변호사, 정치인과 평화 관련 시민단체 등 참여자들의 범위도 확대되어 갔다.

아시아연대회의의 설립 취지문에는 “과거 일본이 저지른 범죄인 종군 위안부 문제의 역사적인 규명과 피해국에 대한 공식적인 배상과 피해자들에게 대한 배상을 실시하도록 하기 위하여 강력한 연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아시아 지역의 피해국과 연대를 모색하게 되었다”고 그 동기를 밝히고 있다(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1992). 또한 연대회의를 진상 규명과 피해 배상 요구, 유엔인권위원회 참여 활동 등 “정신대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활동”을 아우르는 상설기구화할 것을 제안한다. 여성의 눈으로 전쟁과 식민지 범죄를 직시하며, 여성의 경험으로 기존의 역사를 다시 쓰고, 여성의 힘으로 평화로운 세상을 구현하고자 하는 열망을 현실화시키는 첫 걸음이었던 것이다. 이후 아시아연대회의는 2018년 서울에서 열린 제15차 회의까지 꾸준히 이어져 오면서<sup>9)</sup> 일본군 성노예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조성하고, 아시아 여성의 힘으로 전시 성폭력 문제를 환기하고 글로벌 여성인권 규범을 변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

9) 필리핀과 대만에서 각 한 차례씩 열린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 한국과 일본에서 번갈아가면서 개최되어 왔다. 개최지는 다음과 같다. (1) 1992 서울, (2) 1993 사이다마켄(일본), (3) 1995 서울, (4) 1996 마닐라(필리핀), (5) 1998 서울, (6) 2003 서울, (7) 2005 도쿄(일본), (8) 2007 서울, (9) 2008 도쿄(일본), (10) 2011 서울, (11) 2012 타이베이(대만), (12) 2014 도쿄(일본), (13) 2015 서울, (14) 2016 서울, (15) 2018 서울.

### 3. '2000년 법정' 개최의 필요성 대두: 가해자 처벌

성적 폭력을 여성의 관점에서 언어화 하고 법제화 과정에서 함께 한 정대협과 국내 연대 단체들은 1990년대 초부터 가해자 처벌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반보벤(Van Boven) 초청 세미나에서 최초로 제기된 이후 1992년 12월 정대협 대표자 회의에서 재확인하고(김창록 2020, 114),<sup>10)</sup> 1993년 제2차 아시아연대회의에서 제기·확정되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들과 함께 성폭력특별법 제정 공동대책위원회에서 활발히 활동하던 이효재와 이미경이 제2차 아시아연대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책임자 처벌을 제기하였으며, 덕분에 최종 결의문에 책임자 처벌이 포함되었다(5. “일본 정부는 책임자를 분명히 할 것. 책임자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sup>11)</sup> 그리고 결의문 마지막에는 ‘위안부’ 문제의 본질이 ‘성 억압’이며,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진행형임을 명시하고 있다. “모든 성적 노예제도와 강간을 없애”는 것이 운동의 궁극적 목표임도 밝히고 있다.

우리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단순한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형태가 변하면서 아직까지 뿌리 깊게 남아 있는 성적 인권억압으로 파악하여 모든 성적 노예제도와 강간을 없앴을 목표로 합니다(이효재·이미경 외 1993).

10) 최초 제기된 시기는 1992년 12월 정대협 대표자 회의에서다. 반보벤 초청 세미나에서 제기된 내용이 반영된 것이다. 관련 내용은 김창록(2020년 12월 5일)의 글을 참고할 것.

11) 자세한 내용은 「제2차 아시아연대회의 자료집」 참고.

이후 진척된 논의와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등 다양한 국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1995년 일본 ‘국민기금(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이 일으킨 파장, 피해생존자들의 노령화와 연이은 사망 등으로 2000년(‘새 천년’)을 앞두고 운동은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에 놓였다.

1998년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제5차 아시아연대회의는 역사적 책임을 더 이상 회피하기 어려운 바로 그 시점, 일본이 들고 나온 카드였던 ‘국민기금’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한다. 당시 정대협 공동대표 윤정옥(1998)은 개회사에서, 일본 패전 50주년에 제안된 ‘국민기금’이 어떻게 피해자들과 피해자들, 피해자들과 단체(활동가)들 간의 갈등과 분열을 야기했는지 지적하고 그 진행 과정을 소개한 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가부장제 밑에서의 사람은 남성뿐이고 남성들이 하는 일은 전쟁입니다. 전쟁의 가장 큰 희생자는 여성과 어린이였습니다. 이러한 인간지옥 속에서 극치를 이룬 것이 제도적·조직적 강간입니다(윤정옥 1998, 11;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1998/6/27).

전시 성폭력의 문제를 지적한 후 윤정옥(1998)은 유엔 인권위 등을 통해 ‘위안부’ 제도가 전쟁범죄이자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배상해야 함이 분명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범죄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국민기금과 같은 굴욕적인 방법을 통해 피해자에게 보상을 한 것으로 국제사회에 인정받으려” 한다고 통렬히 비판한다(윤정옥 1998, 11).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시점에 “이제는 정말 남성우월주의에 오염되지 않는

여성이 일어나야 할 때”라고 강조한 후, “피해자들과 여성인권 회복을 위해 가해국의 사죄와 배상을 더욱 조직적으로 요구”할 것이며, 이를 통해 “‘위안부’ 문제를 최대한 마무리 짓고 사람들뿐만 아니라 산과 들과 물과 그 안에 사는 모든 동물들과 함께 사는 평화의 새 역사를 열기 위해 노력하자고 다짐한다(윤정옥 1998, 12).

당시 윤정옥의 제안은 ‘법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국민기금에 대한 비판에서 더 나아가, UN 인권위 등에서 이미 지적된 범죄를 부인하는 가해자 처벌과 사죄, 배상, 이를 통한 ‘위안부 문제의 최대한 마무리’였다. 그리고 궁극적인 운동의 목적이 그가 평소 희망하던 “모든 생명체가 평화롭게 사는 세상”임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어서 당시 정대협 기획위원장 지은희(1998, 31-33)는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향후 과제”이라는 발표문에서 정대협 운동의 두 가지 전기를 ① 제52차 UN인권위원회의 여성폭력 문제 특별 보고관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권고안 채택, ② 한국정부의 입장 변화 등을 꼽고 있다. 전자의 경우, 위안소가 국제법 위반임과 이에 대한 법적 책임 명시, 피해자 개인에 대한 배상 권고라는 측면에서 “정대협의 입장을 전폭적으로 반영한 권고안”으로 “정대협 운동의 정당성을 입증한 것”이라 평가한다(지은희 1998, 31). 후자의 경우,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지원금을 선지급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민간위로금 형태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정면으로 반대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이 또한 “7년이 넘는 운동”의 성과라고 지적한다(지은희 1998, 31). 더 주목할 부분은 그가 제기한 “10대 중요 과제”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UN 인권위원회, 인권소위원회에서의 활동을 통해 일본 정부로 하여금 쿠마라스와미 특별보고서의 권고안을 이행하도록 만드는 일. 이를 위한 국제적 압력 조성이 필요. 국제적 압력 중 아래 사항 필요
- ② 미국과 한국이 행한 바 있는 일본 전범의 입국금지조치를 유럽 각국이 취하도록 하여 일본의 전쟁 책임 이행을 촉구하는 일
- ③ ILO 총회 결의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강제노동 등 금지조약 위반임을 확인하고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
- ④ 책임자 처벌 운동 강화
- ⑤ 진상 규명과 개인 배상 문제를 포함하는 특별법 제정 운동
- ⑥ 국민기금 측은 실패를 인정하고 “진상 규명과 배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운동”에 동참할 것을 제안(연대 제안)
- ⑦ 일본 정부가 계속 책임 이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정부로 하여금 일본의 책임 및 배상 등 법적 문제에 관하여 국제사법재판소의 견해를 문도록 요구하는 운동”을 펴나갈 것.
- ⑧ 아시아 피해국은 물론, 일본 여성운동, 일본 사회운동 단체들과의 연대 강화(일본 정부의 분열책에 맞서 상호 이해와 연대 강화를 천명)
- ⑨ “한국에서도 진상조사를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시키고 이제부터 ‘전쟁과여성’ 사료관의 건립을 준비하고 역사교육을 강화할 것”(지은희, 1998, 33). 한국 주도의 진상조사의 필요성, 사료관 건립과 역사교육 중요성 제기
- ⑩ 우리도 “국제인권기구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지은희 1998, 33). 대륙별 인권기구가 있으나 아시아 지역에는 부재함. “아시아에도 인권



문제를 다루는 지역인권기구 설립이 시급”함을 지적(지은희 1998, 33).

특히 4번 “책임자 처벌운동 강화” 부분에서 그는 “1993년 10월 20-22일 일본 사미다마켄에서 열린 제2차 아시아연대회의에서 정대협은 이미 책임자 처벌을 제기”한 바 있으며, 당시 “대부분의 일본 참석자들은 책임자 처벌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일본의 대중들은 말할 것도 없고 대부분의 시민운동 단체들이 정신대 문제 해결운동에서 떨어져 나갈 것을 염려하여 이 요구를 정면으로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았다”고 회상한다(지은희 1998, 31-32). 나아가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이러한 한계 때문에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이행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일본군‘위안부’ 제도의 책임자가 누구였는지 반드시 밝혀지고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지은희 1998, 32).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명하듯, 같은 날(1998년 4월 16일) 일본의 마쓰이 야요리(松井やより 1998. 당시 아시아여성자료센터 소속)는 “‘여성의 인권’ 국제운동에서 본 ‘위안부’ 운동의 평가와 행동제안”이란 발표에서 1990년대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아시아여성 운동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간 추구해 온 운동의 목표 가운데 “가장 불충분했던 것”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라고 지적하면서 “여성에 대한 전쟁범죄자를 재판하지 않았던 전쟁재판을 다시 하기 위해서 여성의 힘으로 여성에 대한 전쟁범죄(성노예제) 국제재판법정을 20세기 최후의 해인 2000년 12월 10일 ‘세계인권의 날’ 전후에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여러 연구자들과 일본 측 활동가들의 기록과 증언에 의하면, 여성국제전범법정은 1997년 11월에 열린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 국제회의에서 이미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는 일본 여성들과 미리 논의하고 중지를 모아 아시아연대회의에서 발표했던 것이다.

마쓰이 야요리(松井やより 1998)는 일황의 처벌을 논할 때 일본 시민사회가 분열될 것을 염려했지만 이를 돌파하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폭력의 20세기가 끝나가는 이때, 그 폭력의 가장 아픈 피해자의 유지를 분명히 세우는 일 없이 폭력이 없는 새로운 세기를 맞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성에 대한 전쟁범죄자를 재판하지 않았던 전쟁 재판을 다시 하기 위해서 여성의 힘으로 <여성에 대한 전쟁범죄(성노예제)국제재판(법정)>을 20세기 최후의 해인 2000년 12월 10일 세계인권의 날 전후에 개최할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松井やより 1998).

그의 제안은 만장일치로 채택되고 '2000년 법정' 개최가 공식 결정된다. 법정 모델은 1966년 영국의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이 베트남 전쟁에서 일어난 전쟁범죄를 고발할 목적으로 유럽에서 개최한 민간법정인 소위, '러셀 법정'(Russell Tribunal, 또는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Russell-Sartre Tribunal)이었다.

그러므로 앞장에서 논의한 바, 유엔 권고안 등 8여 년 간 일군 운동의 다양한 성취(피해생존자의 증언 활동과 소송, 국제인권 규범의 변화 등), 국내외 여성운동의 성장과 연대 - 이를 통한 여성인권, 성폭력, 전시 성폭력 등에 대한 감수성 제고 - 라는 토대 위에, "가해자가 책임지는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다짐"한(지은희 1998, 33) 한국 운동의 의지가 가해국 국민으로서 피해자에게 느

끼는 죄책감과 연민(compassion), 국가 대신 책임을 지고자 하는 윤리적 시민정신이 만난 지점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극동군사법정(도쿄전범재판) 등 무력갈등 시 발생한 성폭력 문제를 전쟁범죄로 다루지 않았던 남성중심적, 백인중심적, 제국주의적 국제법에 대한 문제의식과 도전이 결합되었다. 물론 피해자들이 급격히 노쇠해지는 상황에서 21세기를 앞두고 운동을 “마무리”지어야 한다—윤정옥(1998, 11)의 희망사항처럼—은 중압감 또한 작용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 4. 2000년 법정 진행과 의의

##### 1) 진행

정대협(2001)은 세 차례의 준비모임을 통해 법정의 성격과 향후 방향, 그리고 한국위원회 구성 등을 토론한다. 이를 위해 준비위원으로 윤정옥, 김윤옥, 지은희, 신혜수, 강정숙, 이미경, 양미강을 선임하고, 한국위원회의 구성에 운동단체, 연구자, 법률가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원칙을 마련해 위원장 1명, 부위원장 약간 명을 두기로 한다. 이러한 원칙 하에 1998년 12월 7일, 법학자, 변호사, 역사학자, 사회학자 등 연구자·전문가들과 운동단체 등 총 50여 명으로 구성된 ‘2000년 법정 한국위원회’가 발족한다. 위원장은 윤정옥이, 부위원장은 김윤옥, 정진성이 맡았으며, 법률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 기획·홍보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재정위원회 등 5개의 위원회가 꾸려지고 정대협이 사무국을 맡게 된다. 이들은 이후 만 2년간 11차례의 모임을 가지면서 2000년 법정과 관련한 크고 작은 안건들을 처리하는 최고결정기구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검사단위원회는 회의가 진행되면서 추후 확정된다.

일본의 경우, 1998년 6월, 2000년 법정 준비를 위해 ‘전쟁과여성에대한 폭력 일본네트워크(Violence against War & Women Network in Japan, VAWW Net Japan)’가 구성되고 마쓰이 야요리가 대표를 맡게 된다. 법정 전체의 공동대표는 한국의 윤정옥, 일본의 마쓰이 야요리, 필리핀의 인다이 사요르가 맡았다.

지난한 준비 과정 끝에 ‘2000년 법정’은 2000년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도쿄에서 열린다. 민간단체들에 의해 구성된 시민법정이지만 공식 법정의 형식을 따라,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묻는 민사재판과 범죄에 책임 있는 개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형사재판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정진성, 2004). 개막식, 본 법정 및 국제공청회, 예비 판결로 구성된 법정에는 피해당사자국인 10개국(남·북한, 중국,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대만, 말레이시아, 동티모르, 네덜란드) 공동 검사단을 구성하고, 8개 국가 67명의 피해자를 비롯해 연일 1000~1200여 명에 이르는 세계 각국의 시민들(30여 개 국가), 95개의 언론사와 200여 명의 기자단이 참석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당시 한국 측 피해자로 강일출, 김복선, 김분선, 김분이, 김상희, 김은례, 김화선, 문필기, 박옥련, 신현순, 심달연, 안법순, 양점순, 윤○○, 이용녀, 이용수, 정서운, 최화선, 최갑순, 한도순, 황금주 등이 참석했다. 특히 9개 국가 20명의 피해자들의 증언과(비디오 증언 포함) 직접적 만남은

참석자들 모두에게 큰 충격과 감동을 안겼다. 위안소에서 체험과 이후 지속된 트라우마로 인한 고통의 깊이, 공통된 경험을 지닌 여성들 간의 연대가 청중들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이다. ‘히로히토 유죄’가 선언될 때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정의 격동이 일었던 건, 바로 피해생존자들의 현존(現存) 때문일 것이다.

1년 뒤인 2001년 12월 4일, 헤이그에서 발표된 최종 판결문은 “본 법정  
의 결정은 성폭력범죄의 적절한 책임귀속 즉, 책임을 성폭력범죄의 피해  
자가 아닌 가해자에게 묻고자 하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현대사회에  
서도 여전히 여성을 예속시키고 있는 성적 고정관념의 만연을 바로잡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을 명시한다. 이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관련 행위가  
인도에 대한 죄로서의 강간과 성노예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일왕 히  
로히토(裕仁)를 비롯한 10명의 피고인이 ‘개인의 관여책임’과 ‘상관의 책  
임’에 관해 유죄라고 선언한다.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위안소 제도’가 국  
제법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법적 책임을 지  
며, 주요한 실행행위자를 밝혀내 처벌하고, 완전하고 성실한 사죄와 적절  
한 금액의 배상을 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판결문 제8부 결론에서는 일본군성노예제를 ‘무력 분쟁하 성폭  
력’의 문제로 확인하고, 종전 후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 “생존자  
를 침묵시키고 모욕하고 그들의 치유를 방해”했다고 보면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게 만듦으로써 ‘미래 세대 여성들이 평등과 존엄에 대한 존  
중을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유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강력한 세계 시민의 연대를 통해 범죄자들이 책임을 지게 하

는 것, 이를 통해 “일본군 성노예제의 모든 여성 피해자를 명예롭게” 하고 자 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sup>12)</sup> 철저한 조사기구의 설립과 관련 자료 공

12) 1089. 역사적으로 반복해서 국가들은 무력 분쟁의 폭력 가운데 여성에게 저질러진 성폭력 범죄를 무시하여 왔다.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재판이 행해졌으므로 이러한 무시는 특히 비난받을 만하다. 연합군이 일본군 성노예제를 소추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피해 여성들의 평등한 법적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었고, 그들의 고통이 그 정도로 정부가 비난 받을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견해, 또는 그들은 자원해서 가담했다는 견해를 영속화시켰다. 이렇게 전쟁 종결 직후 재판으로부터의 이러한 배제는 생존자를 침묵시키고 모욕하고 그들의 자유를 방해하는 용서 받지 못할 역할을 했다.

1090. 우리의 희망은 이 여성국제전범법정의 도덕적 힘과 판결이 세계 각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국가들로 하여금 일본에게 이러한 잔학행위를 복구하고, 잘못을 바로잡으며, 미래의 세대가 여성의 평등과 존엄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책임을 인정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1091. 생존자의 용기, 그들의 정의와 연대에 대한 갈망은 여성의 인권을 추구하고 성폭력에 저항하는 온 세계의 운동을 각성시켜 그들로 하여금 이러한 범죄가 또 다시 일어나거나 간과되는 일이 절대 없도록 만들었다. 여성에 대한 범죄가 최근에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소추되기 시작하고 ‘국제형사재판소 로마 규정(ICC Statute)’에 성문화되었다는 것은 그들의 노력의 열매의 하나이며 여성에 대한 폭력의 불처벌을 종결시키는 일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1092. 국가들이 여성에 대한 범죄자를 수사, 소추, 유죄판결 및 처벌하고, 적절한 시일 안에 피해자에게 완전한 배상을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본 법정은 세계의 모든 여성과 사람들이 그 틈을 메우고 그 범죄자들과 세계에게 책임을 물을 것임을 본 법정은 분명히 한다. 생존자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또 가해국인 일본을 포함한 많은 나라의 활동가, 연구자, 변호사, 그리고 번역가 및 학자가 본 법정을 실현시키기 위해 연대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새롭고 강력한 정의의 장치를 형성한 것이다.

1093. 생존자에 대해 저질러졌던 이 범죄들은 2차 대전의 가장 알려지지 않고 구제되지 않았던 부정행위의 하나로 남아 있다. 박물관도, 무명의 “위안부”의 무덤도 없으며, 미래 세대에 대한 교육도 없다. 그리고 일본군의 침략전쟁의 특징이었던 일본군 성노예제와 당시 만연한 성폭력과 잔학행위의 피해자를 위한 심판의 날도 없었다.

1094. 따라서 이 판결을 통해, 본 법정은 일본군 성노예제의 모든 여성 피해자를 명예롭

개를 통해 역사에 남길 수 있도록 하며, 기념관, 박물관, 도서관 등의 설립을 통해 희생자와 생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며, 교과서에 기술하고 관련 교육을 지원할 것을 명시한 것이다(김창록 외, 2018).

결론적으로 준비 과정에서 장소 선정과 공식 언어에 대한 이견, 재정 마련의 어려움, 의사소통의 어려움, 법정 성격과 구조에 대한 상이한 이해와 ‘위안부’ 성격에 대한 이견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법정은 ‘가해자 책임 귀속’이라는 애초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성취했다.<sup>13)</sup>

## 2) 의의: 내셔널리즘의 경계를 넘어, 제국주의적 법 규범에 도전하다!

당시 정대협이 총무였던 양미강(2001)은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보고서”에서 법정의 성과를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한 바 있다. 첫째, “아시아 피해국 간의 네트워크가 확장되고 강고”해졌다. 남북은 물론 동티모르, 중국과 대만 등이 이념을 넘어 하나로 연결되었으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동티모르, 네덜란드 등 국내 운동조직이 법정을

게 하고자 한다. 판사단은 살아가기 위해 그리고 찢겨진 인생을 재건하기 위해 힘써 싸워 오고, 공포와 수치를 넘어 세계를 향해 그들의 이야기를 하고 우리 앞에서 증언한 생존자들의 불굴의 의지와 존엄성을 높게 평가한다. 정의를 위해 싸우려고 나섰던 많은 여성들이 이름 없는 영웅으로 죽음을 맞았다. 역사의 페이지에 새겨진 이름들은 범죄로부터 고통 받은 여성이 아닌 기껏해야 범죄를 저지른 남자들 또는 그들을 소추한 남자들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본 판결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 증인석에 섬으로써 적어도 사흘 동안은 악을 단두대에 두고 진실을 왕좌에 앉힌 생존자들의 이름을 간직하는 것이다.

13) 상세한 내용은 정진성(2016)의 8장을 참고할 것.

계기로 확고해졌다. 둘째, “현재 무력갈등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까지 확장시켜 폭넓은 세계여성운동과의 네트워크를 긴밀하게 강화”시켰다. 셋째, “일본군‘위안부’ 제도 피해의 전체 상을 체계적으로 파악”했다. 넷째, “전(前) 일왕과 전범자 7인에 대한 남북공동 기소를 이끌어냈듯, 여성이 주도하는 통일운동의 모델을 제시”했다. 다섯째, “운동의 다양화와 전문성” 제고다(양미강 2001, 3-4).

한국 측 부위원장이었던 정진성(2004)은 “50년 전이라는 이유에서, 이미 국가 간 협정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정치적인 이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여성의 힘으로, 시민의 힘으로 새롭게 역사를 쓰”는 작업으로서 법정의 의미를 강조한다. 일왕을 비롯해 중요한 책임자를 거명하고 유죄판결을 내림으로써 문제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한 첫 번째 판결이었다고 지적하면서 ‘히로히토 유죄’는 “인류 양심의 목소리로 후에 새롭게 기억될 것”이라 주장한다(정진성 2001). 그는 시민사회의 역량을 한층 성장시키고 국제연대를 확대했다는 점도 주요하게 지적한다. 일본 측 실행위원회인 VAWW-NET Japan에서 조사·기소장 작성을 맡았던 재일조선인 연구자 김부자(金 2010) 또한 “가해국 여성들의 책임감”으로 초국적 여성운동을 만들고, 일본 내에서 범죄의 주책임자 - 일왕 - 에게 유죄를 내렸다는 점을 높게 평가한다.

이미 수차례 알려진 바, 법정 준비와 개최 과정에서 법정의 성격과 구조를 둘러싼 이해 차이가 발생했지만 핵심 갈등 지점은 아니었다고 한다. 김부자(金 2002)는 “분단 극복의 곤란성과 가능성을 동시에 체험”했다고 회고하면서(金 2002, 257), 대부분의 긴장 지점들은 진행 과정에서 해소되



었다고 한다.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적 피해자를 한국 기소장에 넣을 것인  
 가를 둘러싸고 한국 쪽과 갈등이 생겼으나, 2000년 6월에 열렸던 남북정  
 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간 통일 기소장 작성이 결정되어 갈등이 해소되었  
 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과 북한뿐만 아니라 대만과 중국, 그리고 인도네  
 시아와 동티모르가 피해국 검사단으로 [법정에 한자리에 앉아 “피해국들  
 간 [존재했던 내셔널한 문을 열려고”(金 2002, 242) 시도했다는 점을 높이 평  
 가한다.

특히 이데올로기와 분단을 넘어 남북이 하나가 되고 ‘North and South  
 of Korea’이란 표기하에 공동 기소장을 작성함으로써 전 세계에 남북을  
 하나의 나라로 부각시켰다는 점은 커다란 의의라 할 것이다. 정진성은 본  
 연구자와의 인터뷰에서 이 당시를 남-북-재일교포 여성들이 ‘민족적 단  
 결’을 이뤄낸 감격적 순간이라 기억하고 있었다.

“칠판에다가 써가면서 ... 이쪽 저쪽 막 다 박원순 변호사까지 아 이거 안 되  
 겠다. 나누자 그러는 거를 북한 쪽은 너무 의지가 강하고 한번 다시 해보자 그  
 렸는데. 그때가 우리가 오훈가 근데 오전에 모였는데 된 거야. 리허설 했는데.  
 그때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 아~ 남북 통일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루면  
 되는 걸, 왜 그렇게 못했을까. [우리가] 그 남북 공동기소팀으로 해갖고 멋있  
 게 해냈잖아요.”(구술자: 정진성, 면담자: 이나영)

남·북·재일조선인 여성 연대가 가능했던 건, 1991년 열린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부터 남-북-일 여성들이 꾸준히 만나왔고 피

해자들 간 만남도 성사되었으며, 1992년과 1993년에 순차적으로 열린 도쿄와 베를린 국제회의에서 남북한 피해자들과 각국 활동가들이 얼굴을 맞대고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논의했다는 점도 작용했다.<sup>14)</sup> 1993년 9월에 베를린에서 열린 회의는 유고분쟁에서 발생한 여성에 대한 집단성폭력 문제에 직면해 “인간의 존엄·전쟁과 폭력”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재독 한국인과 일본의 여성 운동가들이 공동주최하고 베를린의 많은 NGO와 베를린 주정부가 후원하고 참가했다고 한다. 삼일 간 열린 회의에는 남북한, 필리핀, 네덜란드, 일본, 독일, 유고슬라비아 등에서 증언자와 연구자들이 참여했다. 당시 참석한 일본 출신의 베를린 언론인 카지무라 타이이 지로오(梶村太一, 2018)는 “전시성폭력 피해자들이 주도한 유럽 최초의 국제회의”라 평가하며, 남북한 ‘위안부’ 피해자들의 만남과 증언을 사진으로 기록한 바 있다.

역시 주요하게는 앞서 언급한 아시아연대회의와 유엔 등 국제기구를 통한 꾸준한 만남과 신뢰가 쌓였기 때문일 것이다. 북한 측은 도쿄에서 열린 제2차 아시아연대회의(1993년)와 서울에서 열린 제8차 회의(2007년)에 참석했으며, 6차, 7차, 9차, 10차 등에도 문서로 참여한 바 있다.<sup>15)</sup>

여기에는 민족, 인종, 국적, 언어, 성별, 계층, 분단의 장벽을 인지하되 넘어서고자 한 한일여성들의 연대가 보이지 않는 원동력이 되었다. 한일 여성들은 도쿄전범재판(Tokyo War Crimes Trials, 혹은 극동군사법정 the 1946-48

14)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김윤옥·윤미향(2014)과 문소정(2015)을 참고할 것.

15) 관련 내용은 정대협외의 아시아연대회의 자료집과 강정숙(2016)을 참고할 것.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the Far East)과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가진 한계를 직시하고, 여성들의 경험에 기반한 새로운 체제를 고민하다 마침내 놀라운 열정과 실행력으로 여성국제법정을 개최하고 범죄 책임자의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특히 식민지와 제국주의, 분단과 냉전체제의 또 다른 피해자인 김부자, 양징자, 김영, 송연옥 등 재일조선인 여성들은 일본-남한-북한 여성들 간 (불가능해 보이던) 연대의 토대가 되고 기꺼이 고리가 되면서 ‘2000년 법정’은 물론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 운동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한-일-재일조선인 여성들 간 유연하면서도 강렬한 연대가 일본군 성노예제도라는 20세기 초반 가장 잔혹한 전시성폭력과 페미사이드 문제를 역사에 새겨 넣은 주요 원동력이었다. 이들은 국가가 실패한 정의 실현의 책무를 여성의 힘으로 다하고자 했으며, 이를 마침내 구현해냄으로써 ‘여성 공동체’ 형성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2000년 법정’의 또 다른 의의는 피해생존자의 언어와 행동으로 가부장제 사회에서 성적 관계에 관한 관습은 물론 남성중심적·제국주의적 법의 보편성과 규범성, 정상성에 도전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일본군‘위안부’ 제도의 범죄성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들의 존엄성과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제공했다. 서구 남성 로고스 중심적인 국제법적 틀 속에서 아시아 피해여성들의 증언은 ‘공적 장’에서 잘 들리지도 제대로 해석되기 어렵다. 이에 Son(2018)도 피해자들이 법이 선호하는 로고스 중심적인 증언에 균열을 냄으로써 역설적으로 “무엇이 정의를 구성하는지” 보다 명료하고 확장된 정의를 위한 장을 열어젖혔다고 평가한다(Son 2018, 67). 유사하게 일본의 국제법 학자 아베 고키는 국제법의 ‘중립성’이라는 베일의

그늘에 숨어 있던” “국가=지배 엘리트 중심주의, 서양 중심주의, 남성 중심주의, 현재 중심주의”가 “시민, 비서양, 여성, 과거(미래)를 법의 ‘타자’로 주변으로 배제”해 온 역사에 비추어 볼 때, “그 궁극의 ‘타자’에게 법의 빛을 비춤으로써, 폐쇄적인 국제법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고, 그 탈구축과 재구축을 향한 이정표를 제시”했다고 크게 평가한 바 있다(김창록 2020, 124).

특히 여성의 관점에서 제기한 ‘책임자 처벌’ 문제는 실제 국제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다. ‘2000년 법정’은 유엔 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 쿠마라스와미보고서(2001)와 ILO조약적용전문가위원회의 검토의견(2003)에 인용되거나,<sup>16)</sup> 2003년 발족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성노예’ 개념이 포함되는 데 기여했다. 또한 ‘2000년 법정’의 영향으로 “2010년 과테말라 내전에서 발생한 성폭력을 재판하는 민중법정, 군사정권에 의한 강간과 고문 등 인권 침해를 고발하는 ‘버마여성국제법정’”이 열렸으며, “구(舊) 유고슬라비아와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의 모색”으로도 이어진 바 있다(이케다 에리코 2018, 213). 2000년 버마 여성에 대한 범죄 국제법정(뉴욕), 2010년 버마 여성에 대한 범죄 국제법정(도쿄)이 열리기도 했다.

일본국의 법적 책임을 공식화한 국내외 결의안 채택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2007년 7월 30일 미국 하원결의안 121호를 시작으로, 유럽연합의 회, 네덜란드, 캐나다, 타이완, 한국, 일본 지방의회 등에서 일본 정부의

---

16) ILO는 1999년, 일본 정부에 국민기금 관련 강력한 권고안을 내 이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1년, 2013년 보고서에서 계속해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전문가위원회의 판단을 수록해 왔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었다.<sup>17)</sup> 2007년 11월 20일에는 네덜란드 의회가 일본 정부에게 사죄와 생존자들에게 정신적, 경제적 배상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고, 11월 28일에는 캐나다 연방의회가 일본 정부에게 공식 사죄와 완전한 책임이행을 요구하는 ‘위안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다. 12월 13일에는 유럽연합(EU) 의회가 일본 정부에 일본군성노예 제도에 대한 공식 인정과 공식 사죄, 피해자와 유족에게 법적인 배상, 교과서에 성노예제를 기록하여 올바르게 교육할 것 등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다.<sup>18)</sup>

2008년부터는 일본 정부의 대응을 요구하는 일본 시민들의 결의안 채택 운동도 시작되었다. 최초는 2008년 3월 다카라즈카 시의회 결의안이었다. 다카라즈카 시의회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수용해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이어 일본 전역에 걸쳐 이루어진 시민사회와 양심적

17) 관련 자료는 다음을 참고할 것. [http://www.womenandwarmuseum.net/contents/board/normal/normalList.asp?page\\_str\\_menu=0302](http://www.womenandwarmuseum.net/contents/board/normal/normalList.asp?page_str_menu=0302)

결의안에는 “일본군이 ‘위안부’로 알려진 여성들을 성노예화한 것에 대해, 일본은 명백하고도 모호하지 않은 방식으로 공식 인정하고 사죄”할 것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권고를 따르는 동시에 잔혹한 동 범죄에 대해 현재·미래 세대를 교육시켜야”함을 명시하고 있다.

18) 유럽연합의 경우, 국제엠네스티와 연대해 진행한 캠페인의 성과였다. 결의안에는 “1930년대부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아시아 및 태평양 군도를 식민 통치하고 이를 점령하는 동안 일본 제국주의 군대가 일본군 ‘위안부’로 알려진 젊은 여성들을 강제 성노예로 만든 사실에 대한 역사적·법적 책임을 확실하고 분명한 방식으로 공식적으로 인정, 사죄, 수용할 것”을 일본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인 의원들의 노력 끝에 50개 이상의 지방 의회에서 결의가 채택되었다. 한국의 경우, 2008년 10월 8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공식 사죄 및 배상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

### 3) 남은 쟁점

‘2000년 법정’은 일본인 대 조선인 ‘위안부’, 공창제도 대 일본군 위안소, 보편적 여성인권 대 식민지 지배책임 등을 둘러싼 이견(異見)이 드러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다(金 2001, 230-253). 일본 검사단은 일본인 ‘위안부’에 관해서도 기소를 했는데, 일본 출신 피해자의 존재를 밝힐 뿐만 아니라 공창 출신 ‘위안부’ 존재를 가시화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한다. 조선반도를 비롯해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었던 일본의 공창제도가 ‘위안부’ 제도에 주요한 역사적 배경 중 하나로 작동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해국들은 이러한 ‘연결 지음’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고 한다(金 2001, 246-248). 김부지는 ‘위안부’ 제도와 공창제도에 대한 한일 간 상이한 이해는 결국 좁히지 못했다고 지적한다(구술자: 김부자, 면담자: 이나영, 2017년 2월). 일본의 공창제도와 위안소 간 관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속과 단절, 공통점과 차이, 특수성과 보편성이라는 차원에서 학자들 간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보편적 여성인권 대 일제 식민지(지배 책임)의 특수성과 연관된 쟁점도 해소되지 않았다. 상당수의 외국 학자들이 전시 성폭력과 보편적 여성인권 문제로의 전환을 통해 ‘위안부’ 문제가 국제적 공감과 협력을 얻었으며

이 과정에 ‘2000년 법정’이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는 반면, 생각이 다른 국내 연구자들도 꽤 있다. 한편에서는 페미니스트들이 “인도에 반한 죄”나 “가부장제하 여성폭력의 보편성” 등으로 ‘위안부’ 문제를 사고하지만, 다른 페미니스트들은 식민지 민족 문제의 특수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러한 긴장은 ‘2000년 법정’에서도 드러났다.

가령, 오고시와 이계타는(2010) ‘2000년 법정’을 중심으로 일본 페미니즘과 ‘위안부’ 문제 간 관계를 고찰한 논문 『현대 페미니즘의 윤리학(現代フェミニズムのエシックス)』에서, “법정에 참여한 활동가와 전문가들은 젠더 정의 실현을 중요시” 해왔다고 평가한다. 여성국제전범법정이 “국경을 넘어 페미니즘의 이론적·실천적 성과를 강력히 제기”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오고시와 이계타 2010, 24).

그러나 한국의 정진성(2001)은 역으로 이를 ‘2000년 법정’의 한계로 지적하고 있는데, 개인의 법적 책임을 인도에 반한 죄로 한정하거나, 전시 여성인권 침해 문제라는 보편성 획득을 위해 식민지배의 불법성이 강조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전시하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에 초점을 두었던 “정대협외의 국제연대 방식이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고 국제기구와 비정부 조직들 간의 연대를 가져왔지만 정작 식민지 지배 책임의 문제는 사상”되었다고 지적한다. ‘2000년 법정’ 또한 ‘위안부’ 문제를 전시하 여성 문제로 보는 성격 규정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토로한다. 당시 북한 측 또한 식민지 시기의 문제를 강조했지만 제대로 부각되지 못했으며, 결국 ‘위안부’ 문제의 근본적 원인과 명확한 성격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도 반성하는 게, 그때 이 문제를 여성 문제 보편성으로 가져가려고, 인권 침해, 보편적 인권 침해다, 지금도 일어나는 문제다, 이거를 힘을 얻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으나 사실상 조선에서 간 여성들이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50%는 넘잖아요. 각종 통계가 아무리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저기를 숫자를 줄이려고 애를 써도 50% 넘는 건 확실해. 그니까 식민지 문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게 식민지 맥락이라는 거. 탈식민지, 그 맥락으로 이걸 끌어와야 된다고.” (구술자: 정진성, 면담자: 이나영)

필자는 정진성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일본군 성노예제가 지닌 근본적이고도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생긴 한계가 아닌가 생각한다. ‘여성인권 침해’, ‘전시성폭력’, ‘식민지 민족(인종)차별’, ‘강제동원과 강제노동’, ‘성노예제’ 등 여러 학자들이 다각도로 지적해 왔던 문제의 속성이 사실은 모두 일본군 성노예제의 단면이기 때문이다. 식민지 지배책임과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전범 처리)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 또한 내적 원인에서 파생되었다기보다 서구 제국주의의 미(未)청산과 지속되는 동아시아 냉전체제와 관련 있다. 전시 성폭력이 여성인권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보편성을 획득하는 사이, 식민지의 역사가 근본적으로 도전받고 있지 못한 것은 여전히 제국주의 헤게모니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전시성폭력은 ‘보편적’ 인권 침해의 문제, 식민지배의 불법성은 ‘특수’ 문제라는 이분법적 틀 또한 ‘2000년 법정’의 한계라기보다 국제법의 현재적 한계를 방증하는 것이다.

‘여성’ 정체성을 둘러싼 갈등 또한 ‘위안부’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페미니스트 논쟁의 자장에서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여성운동’ ‘여성 문제’에서 여성은 누구인가, 공통의 경험이란 무엇이며, 단일한 여성 정체성은 가능한가, 인종과 젠더가 분리 불가능하듯, 민족과 여성이 분리 불가능한 건 아닌가 등의 질문은 이미 1970년대부터 서구에서도 제기되어 왔고, 교차성 이론 등 논의가 깊고도 넓게 발전해 왔던 것도 사실이다. 오히려 운동의 활동가들과 피해자들은 ‘여성’에 내재한 긴장과 모순을 끊임없이 드러내면서 그 의미를 재구성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법정 준비 과정과 이후 드러난 ‘여성공통의 경험’에 기반한 국제연대의 ‘불/가능성’에 대한 깨달음, 법정 형식과 구성을 둘러싼 긴장, 공창제도와 성노예제 간 분리 불/가능의 문제, 남성중심의 민족주의 담론에 포섭되지 않으면서도 식민지적 피해의 특수성을 증명해야 하는 딜레마 등은 역설적으로 여성과 민족(인종)이 분리 불가능한 존재이자, 식민지 지배책임과 가해자 처벌에 대한 요구가 젠더정의 실현과 무관하지 않으며, 식민지와 전쟁, 인종, 젠더, 계층이 교차하는 지점에 일본군 성노예제가 있음을 방증한다. 여성인권의 보편성과 식민지 불법성의 특수성 간 대립 또한 제국주의적 국제질서가 현존하는 상황과 여전히 남은 ‘탈식민’의 과제를 노정한 것이었다. 여성의 경험이 법적 프로토콜과 충돌하거나 부분적으로만 이해되거나 근본적으로 배제되는 일은 기실 지금도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겪는 ‘일상’이다. ‘성폭력’이나 ‘성매매’라는 법적 용어조차 부재하던 시절 출발한 한국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은 시작 지점부터 문제의 다면적 속성을 간과하면서 화해 불가능한 갈등들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암초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항해했다고 봐

야 옳지 않을까.

## 5. 나가며: 여전한 과제

이 글은 ‘2000년 여성국제전범법정’의 배경과 의미를 가해자 불처벌의 고리를 끊고자 했던 여성들의 연대 과정을 중심으로 살피고자 했다. ‘2000년 법정’은 민주화운동 과정에 성장한 한국여성운동과 글로벌 페미니즘이 만나는 장에서 태동했다. 피해자중심의 관점에서 성폭력에 대한 법과 제도를 추동하던 국내 여성운동이 성장하고, 전시성폭력에 대한 문제의식과 여성인권의 보편성이 비로소 국제사회에서 확장되던 시기, 문제 해결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가해자 처벌을 여성의 힘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열망에서 현실화되었다.

‘2000년 법정’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피해생존자의 언어와 실천으로 가부장제 성적 관계에 관한 관습은 물론, 남성중심의 법의 보편성과 규범성에 도전했다는 점이다. 비록 법적 구속력이 없는 민간법정이었으나, 제국주의적 국제질서 속에 사장되었던 전시 성폭력의 책임을 피해당사자가 직접 물으며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을 강조하고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성을 회복하고자 했다. 가해자 불처벌과 피해자 낙인화가 일상의 성폭력에서도 여전한 문제로 남아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식민지 여성들의 경험으로 제국주의적 법질서와 국제규범에 균열을 냈다는 점, 냉전과 분단, 이념의 경계를 넘어 남북한과 재일조선인 여성, 아시아여성들의 오랜

연대와 활동이 그 근간이 되었다는 점에서 글로벌 여성인권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겼다 평가할 만하다. 2021년 1월 8일, 일본국의 가해책임을 인정한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이 의미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일본군성노예제의 책임을 가해자에게 귀속시키는 일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우선 사법적 정의 구현이 여전히 멀고도 험한 길이라는 사실이 다시 확인되었다. 1차 소송 판결 불과 석 달 뒤인 2021년 4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민성철)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또 다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면제를 이유로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2차 소송 판결)을 선고하였다.<sup>19)</sup> 피고의 행위가 전쟁 시 발생한 주권적 행위라 보고, 한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중대한 인권 침해를 초래했다 할지라도 국제 관습법을 적용해 국가 면제를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결과적으로 일본국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더군다나 일본 정부는 “일본군이나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연행”은 없었다,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하는 것이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를 [2015년 한일 합의 세 “한국 정부도 인정했다” 등의 내용을 일본 외무성 『외교청서』에 공식적으로 게재하는 등 노골적 부인과 왜곡, 피해자

-----  
 19) 이 논문은 해당 판결문에 대한 분석이 목적이 아니므로 판결문 요지만 제시한다. 무엇보다 본 논문의 심사가 진행되던 시기에 이루어진 2차 판결을 상세히 다루는 것은 논점을 흐릴 우려가 있으므로 판결 관련 분석을 추후 다른 논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상세한 판결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문, 사건번호 2016가합 580239을 참고할 것.

비방을 일삼고 있다. 1월 8일 판결에 대해서도 “국제법 위반” 운운하며 수용할 수 없음을 공식적으로 수차례 밝힌 바 있다.<sup>20)</sup> ‘학문의 자유’라는 의 피를 입고 역사부정론에 일조하는 국내외 연구자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sup>21)</sup>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귀속시키는 일은 일반적인 성폭력 사건 해결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원리임에도, 진실을 추구하는 이들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걸림돌’ 혹은 ‘민족주의자’로 치부되기도 한다. 책임인정에 기반한 ‘문제 해결’이 하염없이 지연되는 사이, 왜곡과 부인의 반복적 퇴행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식민주의의 비참하고 탐욕스러운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남성중심 사회의 올라미에서 여전히 허우적대는 우리가 어떻게 이중삼중의 벽을 돌파하며 새로운 사회와 정치를 상상할 수 있을까. 윤정옥이 그토록 소망했던 “모든 생명체가 평화롭게 사는 세상”이벼락같이 도래

20)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대신은 1월 8일과 1월 18일, 1월 23일 잇달아, 판결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며 ‘양국 간 합의를 부정’하고 ‘국제법을 위반’했다며 한국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바 있다. 관련 뉴스는 다음을 참고할 것. 한겨레 2021/01/08, “위안부 증언 30년만에…‘일 배상하라’ 한국법원 첫 판결.”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977996.html>; 연합뉴스 2021/01/18, “日외무상 "위안부 판결 매우 유감" … '독도 일본땅' 8년째 도발.” <https://www.yna.co.kr/view/AKR20210118128000073>; 중앙일보 2021/01/23, “韓, 위안부 배상 확정판결 시정하라” 日외무상 답화 발표.” <https://news.joins.com/article/23976745>

21) 일본군성노예제를 부정한 미국 하버드 법대 램지어 교수의 논문, “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 논문과 관련 내용은 정의기억연대 홈페이지, “역사부정론 반박” 자료실을 참고할 것. <https://womenandwar.net/kr/%ec%97%ac%ec%82%ac%eb%b6%80%ec%a0%95%eb%a1%a0-%eb%b0%98%eb%b0%95%ec%9d%84-%ec%9c%84%ed%95%9c-%ec%9e%90%eb%a3%8c-%eb%aa%a8%ec%9d%8c/>

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사회는 불가능해 보이는 미래를 상상하는 우리 스스로의 급진성과 실천으로 변화해 왔음을, ‘정의를 지향한다고 내 스스로가 정의 그 자체는 아님’을,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는 한 순간 덜 나쁜 선택을 하고 더 나약한 인간의 손을 잡을 뿐인, 그저 평범하고 모순투성이인 나약한 인간임을, 그리고 “단단함을 취약함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취약함과 더불어 사는 방식임을”(Ahmed 2017, 322) 명심하려 한다. 무엇보다 ‘2000년 법정’의 유산을 잇는 일은 특정 시민단체, 특정 연구자들만의 과제가 아님을 다시 되새기려 한다. ‘2000년 법정’ 20주년의 교훈은 바로 여기에 있다. ~~XXXX~~

## 참고문헌

- 강정숙. 2016. “일본군성노예제문제와 관련한 남북교류와 복측의 대응: ‘2000년일본군성노예제 범여성국제법정’과 그 전후 움직임을 중심으로.” 『여성과역사』. 24. 139-186.
- 김윤옥·윤미향. 2014. “남북한 연대활동.”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년사 편차위원회 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년사』. 4장. 149-179.
- 김창록. 2020. “2000년 여성국제법정의 맥락: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법적 책임.’” 「2020년도 국제 심포지엄 2000년도 여성국제법정의 공공기억과 확산: 식민주의를 넘어서, 미래세대를 향하여」. 미간행(12월 5일).
- 김창록 외. 2018. 『(가칭) 국립 일본군‘위안부’연구소 및 역사관 건립을 위한 연구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미간행.
- 마쓰이 야요이(松井やより). 1998. “여성의 인권, 국제운동에서 본 ‘위안부’ 운동의 평가와 행동제안.”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편. 『정신대 자료집 9: 제5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아시아연대회의 보고서』. 미간행. 59-64.

- 문소정. 2014.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글로벌 페미니즘의 정치학: 아시아연대회의의 일본여성운동을 중심으로.” 『동북아문화연구』. 39. 477-492.
- \_\_\_\_\_. 2015.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남북여성연대.” 『통일과평화』. 7(2). 213-246.
- 아메드, 사라(Ahmed, S.). 2017. 『페미니스트로 살아가기』. 이경미 역. 동녘.
- 양미강. 2001.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준비과정.” 『2000년 국제법정 보고서』. 3-4.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여성가족부. 2004. 『일본군 위안부 관련 국제기구 권고 자료집』. 미간행 <http://www.hermuseum.go.kr/cop/bbs/anonymouselectBoardArticle.do#LINK>.
- 오고시와 이케다. 2010. 『현대 페미니즘의 윤리학(現代 フェミニズムのエシックス)』. 青弓社.
- 윤미향. 1992. “정신대(위안부) 문제 해결운동의 전개과정과 앞으로의 과제.” 『정신대 자료집 II』. 미간행.
- 윤정옥. 1998. “개회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편. 『정신대 자료집 9: 제5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아시아연대회의 보고서』. 미간행. 11-12.
- 이나영. 2017. “일본군 ‘위안부’ 운동 다시 보기: 문화적 트라우마 극복과 공감된 청중의 확산.” 『사회와역사』. 115. 65-103.
- \_\_\_\_\_. 2018. “경계에서 출발해 경계를 넘어: 1990년대 일본군 ‘위안부’ 운동의 초국적 연대를 중심으로.” 『구술사연구』. 9(2). 193-232.
- 이케다 에리코(池田理子). 2018. “‘위안부’ 문제를 미래로 이어가다: 여성국제전법법정이 제기한 것.” 『위안부’ 문제와 미래에 대한 책임』. 민속원. 204-217.
- 이효재·이미경 외 참가자 일동. 1993. “제2차 아시아연대회의의 결의문”(10/22). <http://womenandwar.net/kr/%EC%9E%90%EB%A3%8C%EC%8B%A4/?pageid=6&mod=document&uid=92> (검색일: 2021년 02월 09일).
- 정진성. 2001.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Women’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on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in 2000)’의 배경과 의의.” 『여성과사회』. 12. 163-179.
- \_\_\_\_\_. 2004. 『일본군 성노예제』. 서울대학교출판부.
- \_\_\_\_\_. 2016. 『개정판: 일본군 성노예제』. 서울대학교출판부.
- 지은희. 1998.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향후 과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편. 『정

- 신대 자료집 9: 제5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아시아연대회의 보고서』. 미간행. 31-33.
- 쿠마라스와미, 라디카. 2001. “여성에 대한 폭력 특별보고관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비간행. <http://theme.archives.go.kr/viewer/common/archWebViewer.do?archiveId=0001209374#1>
- 카지무라 타이이지로오(梶村太一). 2018. “전쟁범죄에 대한 국가의 사죄란 무엇인가.” 『‘위안부’ 문제와 미래에 대한 책임』, 민속원. 238-253.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1992. 『정신대 자료집 III: 정신대 문제 아시아연대회의 보고서』. 미간행.
- \_\_\_\_\_. 1998/6/27. 『정신대 자료집 9: 제5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아시아연대회의 보고서, 이제, 일본 정부의 배상으로 해결을』. 미간행.
- \_\_\_\_\_. 2001. 『2000년 국제법정 보고서』. 미간행.
- \_\_\_\_\_. 2008. 『2008년 정대협 사업방향 및 중점 사업』. 미간행.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ILO). 2003. *Report of the Committee of Experts on the Applications of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Son, E. W. 2018. *Embodied reckonings: “Comfort Women,” Performance, and Transpacific Redress*. MI, Ann H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金富子. 2001. “女性国際戦犯法廷が乗り越えたものと乗り越えなかったもの.” VAWW-NET ジャパン編. 『裁かれた戦時性暴力』. 230-253. 東京: 白澤社.

\_\_\_\_\_. 2002. “報告韓国: 南北分断克服への闘い.” VAWW-NET ジャパン編. 『女性国際戦犯法廷の全記録』. 257-259. 東京: 緑風出版.

\_\_\_\_\_. 2010. “女性国際戦犯法廷後の韓国女性運動と日本: フェミニズム ‘ナショナルイズム’ 植民地主義.” 大越愛子・井桁碧 編. 『現代フェミニズムのエッセックス』. 141-170. 東京: 白澤社.

## The Women'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on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in 2000

Its Achievements and Challenges

Lee, Na-young

Professor, Chung-Ang University

This article examines the background, progress, and issues of the 2000 Women'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which brought together the victims, support groups, and women citizens around the world to hold the perpetrators legally responsible for the war crimes they have committed. The 1990s brought a change in the global norms of women's rights and an increased sensitivity to wartime sexual violence. This period also witnessed the growth of Korean women's movements along with democratization movements, the introduction of laws and institutions for the punishment of sexual violence, and a more active role taken by the victims of wartime sexual violence, and the expansion of international solidarity. These developments l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nature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and the principles for resolving these issues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uch as the United Nations. Nevertheless, Japan did not acknowledge the war crimes committed against women and denied its legal responsibility. Against this situation, women around the world rose up to form the 2000 Women'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to stand against the imperialist international law, which did not treat the "comfort women" issue as a war crime,

The significance of the 2000 Women'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are as follows. First, the women of North and South Korea formed a solidarity that



crossed the barriers of national division and ideology. Second, the Tribunal provided a space for the victims' voices and actions challenging the universality and normativity of male-centered, colonialist, and imperialistic laws as well as the customs on sexual relations in a patriarchal society to be seen and heard. Third, the Tribunal presented the women's perspective on what constitutes the 'proper punishment' to end the international practice of giving immunity for war crimes, which later affecte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various ways. At a time when historical denialism in the academia is rising as a problem worldwide, what the 2000 Women'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teaches us today is the need to remind ourselves that resolving the issues surrounding the Japanese military's sexual slavery remains as a pending task.

- **Keywords:** The Women'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on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in 2000,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Comfort Women,' Transnational women's movement, Legal responsibility and immunity

투고: 2021/03/17 심사: 2021/04/15 확정: 2021/05/06